

##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신 *철	신 *철 1967-04-25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당사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05-23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06월 1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신**	신** 1967-04-25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담당자 : 박미소      문의전화 : 052-295-9001 )

2024년 06월 05일

